

국내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안전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훈 · 김찬오 · 이홍주 · 최진숙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1. 서 론

21세기에서 우리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관리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해·위험성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 재해의 위험이 뒤따르는 각종 제품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제조물책임제도와 더불어 확고한 제품안전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워진 KAS : 한국제품인정기구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2. 본 론

■ 미국의 제품안전 및 인증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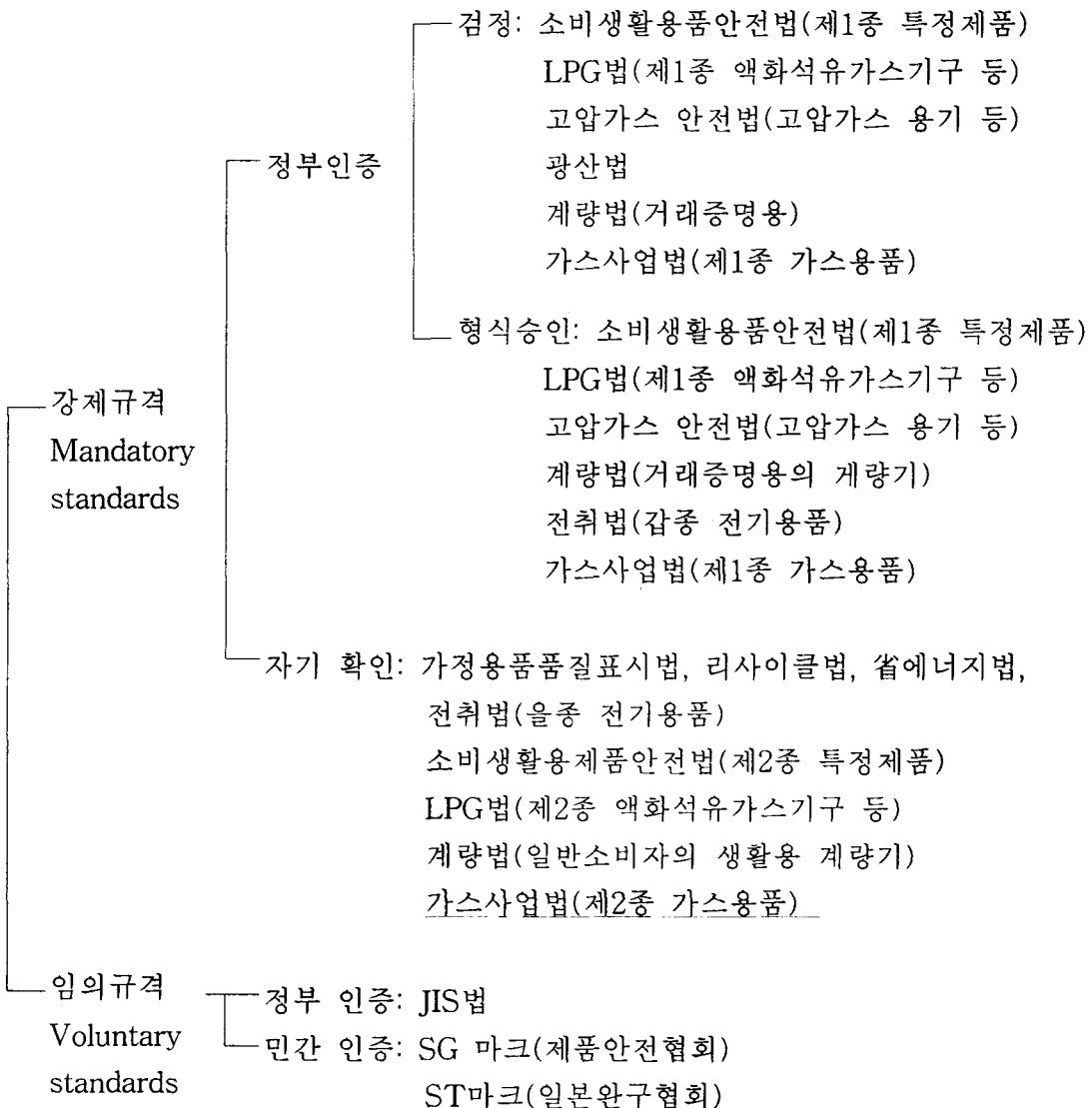
- 미 연방정부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등 수많은 제품에 대해 여러 정부기관을 통해 법적규제를 취해왔음
- 또한 제품에 관한 안전규칙은 주정부, 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채택하는 것 이 일반적인 관례임
- 1972년 미 연방정부가 제정한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법 등에 의거 지정된 제품을 정부기관이 감독, 관장하고 있음
- 그러나, CPSA법 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UL 등 민간의 표준규격제도하에서 수행됨
- 미국 정부가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민간부문에 양도하고 있는 것은 제품책임(Product Liability)을 제조업체에게 전적으로 부담지우는 미국 관행때문임

■ EU의 제품안전 및 인증제도의 개요

- 1985년 EU집행위는 기술적 통일과 표준화에 관한 “신접근방법(New Approach)”을 제정
- 이에 의하여 EU지침(Directive)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건 및 안전요건들만 명시하고 이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격의 개발은 유럽표준화기구에 위임
 - 유럽표준화기구 : CEN(전기 및 통신외 전분야)
CENELEC(전기 분야)
ETSI(통신 분야)
- EU집행위는 1989년에 유럽 품질인증규격의 사용을 장려하고 유럽차원에서의 품질인증체제 개편을 위한 적합성평가에 관한 결의안 채택
- 1993년에 New Approach 지침들이 적용되는 제품들에 부착하는 CE마킹을 정의하는 법령 제정
- EU는 New Approach가 나오기 전의 기술규정들까지 포함해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 제품인증제도 시행 중
 - New Approach 지침에 의해 지정된 공산품 : CE마킹 대상품목
 - 기타 : 자동차, 트랙터 및 농업기계,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건설관련제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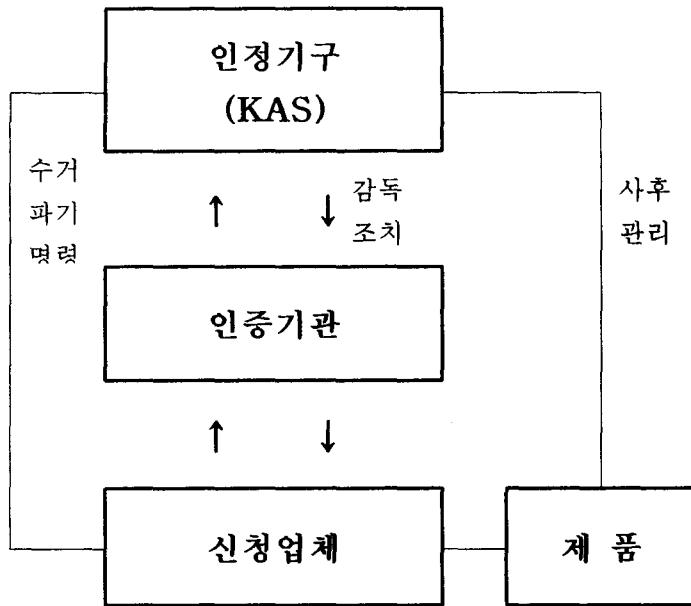
■ 일본의 제품안전 및 인증제도의 개요

- T 마크제도 관련법규 : 전기용품취체법
- S 마크제도 관련법규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가스용품 강제검사제도 관련법규 : 가스사업법, LPG법



KAS: 한국제품인정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제품인증기관의 인정 및 사후관리
-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및 개정
-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상호인정협정등 국제협력 추진 및 KAS 교육기관 지정 운영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인증, 검사, 시험 그리고 인증된 제조품질체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스스로 이를 점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검업무가 바로 인증기관의 몫이다.

시험, 교정 기관과 마찬가지로 시스템과 제품 인증분야에도 그들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은 국가별로 승인된 인정기구에 의해 인정됨으로써 해결된다. 국내에서는 KAS가 담당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품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은 제품에 대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이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 따라서 KAS에서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위험성평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같이 함으로써 제조물 안전관리의 제도적이 배경을 마련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줄일수가 있다. 또한 보험에서는 보험금액 책정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한다.

가) 시험·검사 성적서의 활용

강체검사 품목지정 등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 생산업체의 제품기획 및 연구, 상품구매 결정, 인반 국민을 위한 의학 및 보건서비스, 소비자보호, 환경보호에 활용.

나) 위험성평가에 기법에의한 위험성평가

제품전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휴면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고려한다. 이와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코라스에서는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성평가를 실행한 후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서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수 있도록 한다.

위의 전체적인 제품안전인정시스템에서 KAS는 인증기관과 위험성평가 전문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제품 사후관리를 총괄적으로 해야한다.

3. 결 론

1.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험성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신설된 KAS에서 총괄 관리해야한다.
2. 위험성평가방법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화되어있는 위험성평가 툴(tool)을 이용하고 국가 코드인 KS를 활용해야한다.
3. CE 마크와 같이 단일화된 안전마크를 사용해야한다.
4. KAS와 업체와 보험과의 관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5. 제품안전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제품안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21세기를 향한 제품안전관리 강화방안”, 김찬오, 산자부 기술표준원 토론회자료, 2000.
2. U.S. Department of Labor, OSHA, “Process Safety Management”, OSHA 3132, 1992.
3. 박창섭,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는 국내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1996.8
4. 제1회 한국기업의 PL(제조물책임)대책 세미나 자료, 2000.
5.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http://www.ul.com>
6. 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http://www.fcc.org>.
7. “주요 국가의 제품인증제도 요약”, 1999, 한국 PL센터
8. 日本, 消費生活用品安全法, 1973년 6월 6일, 法律 제31호
9. 공업진흥청,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 동향과 환경영향 인증제도 조사”, 1994.12.

10. 품질경영촉진법, 전문개정 93.12.27, 법률제4622호
11. 산업표준화법, 전문개정 92.12. 8, 법률 제4528호
12. 제조물책임법, 법률 제6,109호
13. 소비자보호법, 전문개정 86.12.31, 법률 제3921호
1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99. 2. 5, 법률 제5789호
15.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nference, <http://www.ilac.org>
16. Ais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http://www.aplac.com>
17.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http://www.iaf.org>
18.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http://www.pac.com>